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 례 안
(8건)

거 창 군

--- 목 차 ---

| 의안번호 | 조 례 명 | 쪽수 |
|----------|---|----|
| 2024-105 |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략담당관) | 1 |
| 2024-106 |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구교육과) | 5 |
| 2024-107 |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 9 |
| 2024-108 |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축과) | 15 |
| 2024-109 |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정책과) | 19 |
| 2024-110 |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사업소) | 23 |
| 2024-111 |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사업소) | 29 |
| 2024-112 |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체육시설사업소) | 33 |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24-105 |
|----------|----------|

| | |
|-------|------|
| 제 출 자 |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준공(2024. 10.)에 따라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에서 일하는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설치를 정함(안 제3조)
- 다. 입주 대상 및 절차를 정함(안 제4조·제5조)
- 라. 이용료 및 면제를 정함(안 제6조)
- 마. 퇴거 및 이용제한, 위탁을 정함(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61조, 「근로기준법」 제100조
- 나. 예산조치
 - 1) 설립비: 2022년~2024년 예산 501천만원(국비 75, 도비 110, 군비 311)
 - 2) 운영·관리비: 2025년 예산 4천만원 확보 예정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9. 12~10. 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7조제5호)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조성을 위하여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근로자”란 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제3조(농업근로자 기숙사)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근로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주거시설
2. 관리사무실, 교육장 등 공용시설

② 기숙사는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3길 36에 둔다.

제4조(입주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기숙사의 입주 대상은 농업근로자로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 결정에 있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농업근로자의 입주를 우선 할 수 있다.

제5조(입주 신청 및 결정) ① 기숙사에 입주하려면 군수에게 입주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제6조(이용료 기준 및 면제) ① 군수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식비 징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숙사 이용료를 정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약 국가의 관계자가 관련 행사·교육·과견 등에 참여하기 위해 군을 방문할 경우 기숙사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퇴거 및 이용제한)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퇴거할 것을 명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입주 요건을 위배한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인 경우
4. 기숙사에서 폭행·성폭력 등 형사입건 대상 범죄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기숙사규칙 위배 등 기숙사 운영상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숙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관리 비용
- 나. 관련 조문: 농업근로자 기숙사(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 연도 | 1차연도 (2025년) | 2차연도 (2026년) | 3차연도 (2027년) | 4차연도 (2028년) | 5차연도 (2029년) | 합계 |
|---------|-----------------|-----------------|-----------------|-----------------|-----------------|-----|
| 군비 | 40 | 41 | 42 | 43 | 44 | 210 |

※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립비

- 1) 2022년~2024년 예산 501천만원
- 2) 국비 75천만원, 도비 110천만원, 군비 311천만원

3. 관련 의견: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예산 필요함

4. 비용추계 요약

- 가. 2025년도 예산 40백만원
- 나. 일반물품, 수선유지비, 제세공과금 등 운영경비

작성자 전략담당관 이 남 열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24-106 |
|----------|----------|

| | |
|-------|------|
| 제 출 자 |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군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여 거창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교육도시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등록금의 지원 및 중복지원 제한을 정함(안 제5조·제6조)
- 라. 신청 방법, 사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1,000백만원 확보 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 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6. 28.~7. 1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인재 육성 및 인구 유입 도모를 위해 거창군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한국장학재단”이라 한다)의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고등교육기관(이하 “고등교육기관”이라 한다)의 학사과정에 재학(입학, 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학생을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등록금”이란 고등교육기관 재학에 필요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거창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등록금의 지원) ① 군수는 군 출신 인재 양성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대학생 등록금의 지원에 관한 세부 요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①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서 같은 목적의 등록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액만큼 빼고 등록금을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할 수 있다.

1. 대가성 장학금
2. 일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신청 방법)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매 학기 전 한국 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미리 신청한 후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대학생 등록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에 위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금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대학생 등록금의 지원은 2025학년도 등록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의 일부 지원
- 나. 관련 조문: 등록금의 지원(안 제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 1차연도 (2025년) | 2차연도 (2026년) | 3차연도 (2027년) | 4차연도 (2028년) | 5차연도 (2029년) |
|----|-----------------|-----------------|-----------------|-----------------|-----------------|
| 군비 | 1,000 | 2,000 | 2,000 | 2,000 | 2,000 |

2025년 시범시행 후 확대예정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 2,000백만원=1,663명×1,200천원

1. 지원 대상자: 1,663명 = 500명×0.95×3.5년

- 가. 지역 고교 졸업생 700명 중 지역 출신 대학 학생 500명
- 나. 군의 최근 3년간 고교 졸업자 중(재수생 포함) 대학 진학률 95퍼센트
 - 1) 4년제 일반 대학 진학 비율 75퍼센트
 - 2) 전문대학 진학 비율 25퍼센트

2. 1인당 연간 평균 지원 금액: 연 120만원(한국장학재단 자료 활용 추정)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24-107 |
|----------|----------|

| | |
|-------|------|
| 제 출 자 |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단체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진흥을 위한 단체관광 전담여행업자 지정·운영 등 관광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을 입안원칙에 맞게 정비(안 제1조)

나. 관광사업 지원기준 확대 및 정비함(안 별표)

1) 법령에서 위임된 관광사업별로 정비

2) 관광사업 지원 확대

가) 단체관광 전담여행업자 지정·운영

나) 지역업체 등과 관광활성화 협약 및 그 협약상품 지원

다) 디지털관광주민증 가맹업체 및 소지 관외 관광객에게 물품·상품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제48조·제67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 50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8. 22~9. 1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양평가: 반영함(안 제4조의2)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공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호·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및 접근성 개선
3.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사업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의2(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2. 관광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환경 조성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 4.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의2(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사업 4.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

[별표] 관광사업 지원기준(제4조 관련)

| 사업분야 | 세부사업 |
|---|---|
| <p><u>1. 관광상품 및 관광 자원의 개발·운영</u></p> | <p>가. 관광택시 운영 나.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 다. 지역 문화유적·관광지의 답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u>연계한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개발</u> 마. <u>단체관광상품 발굴을 위한 지원</u> 1) 단체관광 유치 <u>여행업자에 인센티브</u> 2) <u>단체관광 전담여행업자 지정·운영<신 설></u> 바. 관광상품 또는 관광자원 기획·발굴·판매</p> |
| <p><u>2. 관광 홍보</u></p> | <p>가. 국내외·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나 홍보여행 나. 관광기념품·관광사진 공모전 및 경진대회 <u>개최 및 참가</u> 다. 관광홍보 마케팅 라. 관광시설 등 <u>관광자원의 홍보</u>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상품권 또는 물품 지원 1) 스탬프투어 <u>참여자</u> 2) <u>홍보여행 참여자</u> 3) 관광상품 및 관광지 등의 소셜미디어 홍보 참여자 4) <u>거창군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 관외 관광객<신 설></u></p> |
| <p><u>3. 관광복지 증진</u></p> | <p>가. <u>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제4조의2 각 호의 사업</u> 나. 그 밖에 관광복지 증진 사업</p> |
| <p><u>4. 주민주도 지역 관광 활성화사업 <신 설></u></p> | <p>가. <u>지역업체 등과 관광활성화 협약 및 그 협약상품 지원</u> 나. <u>거창군 디지털관광주민증 가맹업체에 물품 등 지원</u></p> |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단체관광 전담여행업자 지정·운영

나. 관련조문: 관광사업 지원기준(안 별표)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 연도 | 1차 연도 (2025년) | 2차 연도 (2026년) | 3차 연도 (2027년) | 4차 연도 (2028년) | 5차 연도 (2029년) | 합계 |
|---------|------------------|------------------|------------------|------------------|------------------|-----|
| 군비 | 50 | 50 | 50 | 50 | 50 | 250 |

3. 관련의견

단체관광상품 발굴을 위하여 단체관광 전담여행업자를 지정하고 운영 하려는 바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함

4. 비용추계 요약

가. 관광상품 개발·홍보비 지원

나. 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금 지급

문화관광과장 임 양 희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24-108 |
|----------|----------|

| | |
|-------|------|
| 제 출 자 |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군수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의무화함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군의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정함(안 제4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건축법」 제87조의2
-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3
- 3)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 4)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83호)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대상 지자체 지정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 100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8. 19~9. 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른 거창군 지역 건축안전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영 제119조의3에서 “관할 구역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공사장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위반
2. 장기방치건축물 안전점검
3.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4. 지진·화재·태풍 등의 피해를 입은 재난주택의 조사·안전점검 및 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u><신 설></u></p> | <p><u>제45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른 거창군 지역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중 영 제119조의3에서 “관할 구역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건축공사장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위반</u> <u>2. 장기방치건축물 안전점검</u> <u>3.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u> <u>4. 지진·화재·태풍 등의 피해를 입은 재난주택의 조사·안전점검 및 관리</u> <u>5.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u> |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필수전문인력 배치

나. 관련 조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안 제4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 1차연도 (2026) | 2차연도 (2027) | 3차연도 (2028) | 4차연도 (2029) | 5차연도 (2030) | 합계 |
|----|----------------|----------------|----------------|----------------|----------------|-----|
| 군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3. 관련 의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해진 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배치하고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1) 필수전문인력: 임기제(나, 다 등급) 2명

작성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24-109 |
|----------|----------|

| | |
|-------|------|
| 제 출 자 |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총리령) 개정(2024. 11. 23.)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의 수수료를 정함(안 제2조)
- 1) 근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으로 수수료를 조례에 위임
 - 2) 수수료: 건당 3,000원
- 나. 진료비 등의 납부수단 제한 정비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총리령) 제5조
- 2) 「전자정부법」 제1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9. 30.~10. 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건당 3,000원

제4조 중 조 제목 “(진료비 등의 납부방법)”을 “(진료비 등의 납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날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한다.”를 “날에 납부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p> <p>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은 자로부터 진료 등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p> <p>③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진단서 및 일반진단서: 건당 500원 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같은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3. 이미 발급된 진단서 등의 재발급: 건당 300원 <p>제4조(진료비 등의 납부방법) 진료비 등은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날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u>납부해야 한다.</u></p> | <p>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p> <p>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은 자로부터 진료 등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p> <p>③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진단서 및 일반진단서: 건당 500원 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건당 3,000원 3. 이미 발급된 진단서 등의 재발급: 건당 300원 <p>제4조(진료비 등의 납부) 진료비 등은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날에 <u>납부해야 한다.</u></p> |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24-110 |
|----------|----------|

| | |
|-------|------|
| 제 출 자 |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가정용 상수도 급수공사비 분할납부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추가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도 급수공사비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함(안 제13조)

- 1) 현행: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2) 추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수도법」 제38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8. 30~9. 1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및”을 “「수도법」 제38조 및”으로 한다.

제2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3호로 제7호를 제4호로 제10호를 제5호로 제11호를 제6호로 각각 한다.

제6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항을 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5항·제6항을 제4항·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 제6항) 중 “수급권자”를 수급권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별표 2”를 “별표 1”로 “별표 4”를 “별표 2”로 각각 한다.

제33조제2항 중 “별표 4”를 “별표 2”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별표 7”을 “별표 4”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1로 별표 4를 별표 2로 별표 7을 별표 4로 각각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수공사비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군의 상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 비용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에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삭제 <2014.10.01.> 4. 삭제 <2014.10.01.> 5. "상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삭제 <2009.6.10.>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상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상수도요금을 말한다.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군의 상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 비용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에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상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상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상수도요금을 말한다. <p><삭 제></p> |

분담금을 말한다.

9. 삭제 <2016.2.17.>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내)를 말한다.

11. “가구(세대)”란 「주민등록법」상 세대이며,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며 독립된 취사생활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제6조의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안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안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상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급수설비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있는 경우 상수도사용자 등이 보

5.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내)를 말한다.

6. “가구(세대)”란 「주민등록법」상 세대이며,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며 독립된 취사생활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제6조의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안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안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상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급수설비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상수도사용자 등이

조상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삭제 <2009.6.10.>

⑤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은 상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상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상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에 따른 사용요금과 별표 4의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3조(구경별 기본요금) ① 상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설

보조상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은 상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상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상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1의 업종별 요금표에 따른 사용요금과 별표 2의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구경별 기본요금) ① 상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설

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별표 4에 따라 매월 상수도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7조(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⑥ (생략)

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별표 2에 따라 매월 상수도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7조(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⑥ (현행과 같음)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24-111 |
|----------|----------|

| | |
|-------|------|
| 제 출 자 |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전지훈련 선수단의 숙박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지훈련 선수단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거창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지훈련 선수단의 지원사항을 구체화함(안 제11조제3호)

- 1) 숙박, 훈련에 드는 필수경비
- 2) 군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20,000천원 확보 예정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9. 12.~10. 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정지원)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도 단위 등의 체육대회 유치·개최
2. 전지훈련시설의 관리·홍보
3.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
 - 가. 숙박, 훈련에 드는 필수경비
 - 나. 군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등
4.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호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u>제11조(재정 지원)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u>1.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u></p> <p><u>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대회 홍보에 따른 운영 지원</u></p> <p><u>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지원</u></p> | <p><u>제11조(재정지원)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u>1. 전국·도 단위 등의 체육대회 유치·개최</u></p> <p><u>2. 전지훈련시설의 관리·홍보</u></p> <p><u>3.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u> <u>가. 숙박, 훈련에 드는 필수경비</u> <u>나. 군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등</u></p> <p><u>4.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u></p> <p><u>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 지원

나. 관련 조문: 재정지원(안 제11조제3호)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나.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비용: 2025년 군비 20,000천원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24-112 |
|----------|----------|

| | |
|-------|------|
| 제 출 자 |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직영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친환경대중골프장 경영의 합리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사업시설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나. 특별회계, 이익의 처리, 업무 상황의 공표를 정함(안 제4조~제6조)
- 다. 골프장 이용료 등, 이용의 취소·제한, 위탁관리를 정함(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공기업법」 제5조
-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3,073,266천원 확보 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9. 19.~10. 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8조제6호)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① 거창군수는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이하 “골프장 직영기업”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골프장 직영기업은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우륵길 410-284 일원에 둔다.

제3조(사업시설) 골프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프장
2. 휴식·사무실·주차장 등의 부속 시설

제4조(특별회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골프장 직영기업에 친환경대중골프장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5조(이익의 처리) 관리자는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 사업연도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填)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립한다.

1. 상환되지 않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 연도 상환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減債)적립금 적립
2. 제1호의 처리를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분의 8에 해당하는 건설기당적립금 적립

제6조(업무 상황의 공표) 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상황을 해당 사업연도 상반기에는 8월 31일까지, 하반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현황
2. 회계 상황(다만, 상반기 보고는 시산표(試算表)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골프장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골프장 이용료 등) ①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을 한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후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하 “거창군민”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표 2에 따라 반환한다.

1. 골프장 이용 중 천재지변, 기상악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관리자가 운영을 중단한 경우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의 취소 및 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3. 골프장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도박성 골프를 하거나 폭행·성희롱·성폭력 등을 행한 경우
7. 술에 만취한 사람
8. 감염성 질병이 확인된 사람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탁관리) 군수는 골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 및 감면 기준(제7조제2항 관련)

| 구분 | | 그린(1인) | | 카트(1팀) |
|-------------|-----|---------|---------|---------|
| | | 일반 | 거창군민 | |
| 주중 | 9홀 | 30,000원 | 25,000원 | 32,000원 |
| | 18홀 | 60,000원 | 50,000원 | 60,000원 |
| 토요일· 공휴일 | 9홀 | 40,000원 | 35,000원 | 32,000원 |
| | 18홀 | 80,000원 | 70,000원 | 60,000원 |

[별표 2]

이용료 반환기준(제7조제3항 관련)

| 구분 | | 반환 금액 |
|--------|-------------|---|
| 그린(인당) | 주중 | 이용 홀당 3,000원을 정산 후 남은 금액 |
| | 토요일· 공휴일 | 이용 홀당 4,000원을 정산 후 남은 금액 |
| 카트(팀당) | | 9홀 기준 1홀 홀아웃 전: 전액 9홀 기준 1홀 홀아웃 후: 반환 불가 |

※ 그 밖에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에 따른다.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안 제2조)

나. 비용발생 요인: 친환경대중골프장 사업 경영을 위해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 구분 | 1차 연도 (2025년) | 2차 연도 (2026년) | 3차 연도 (2027년) | 4차 연도 (2028년) | 5차 연도 (2029년) | 합계 | |
|--------------------|------------------|------------------|------------------|------------------|------------------|-------------------|-------------------|
| 총 비용(a - b) | - | 93,927 | 106,157 | 6,012 | - 1,005 | 205,091 | |
| 세출 | 인건비 | 1,100,744 | 1,119,457 | 1,138,487 | 1,157,842 | 1,177,525 | 5,694,055 |
| | 공공운영비 | 108,700 | 108,700 | 108,700 | 108,700 | 108,700 | 543,500 |
| | 관리용역 등 | 346,852 | 346,852 | 346,852 | 346,852 | 346,852 | 1,734,260 |
| | 수리수선 등 | 92,200 | 192,200 | 192,200 | 92,200 | 92,200 | 661,000 |
| | 지급수수료 등 | 138,232 | 138,232 | 138,232 | 138,232 | 138,232 | 691,160 |
| | 행정운영경비 | 66,538 | 66,800 | 67,000 | 67,500 | 67,800 | 335,638 |
| | 투자비상환금 | 1,220,000 | 1,200,000 | 1,200,000 | 1,200,000 | 1,200,000 | 6,020,000 |
| 소계(a) | 3,073,266 | 3,172,241 | 3,191,471 | 3,111,326 | 3,131,309 | 15,679,613 | |
| 세입 | 임대료수익 | 14,190 | 14,190 | 14,190 | 14,190 | 14,190 | 70,950 |
| | 입장료수익 | 2,455,074 | 2,460,000 | 2,465,000 | 2,478,000 | 2,495,000 | 12,353,074 |
| | 대여료수익 | 600,878 | 601,000 | 603,000 | 610,000 | 620,000 | 3,034,878 |
| | 관리비수익 | 3,124 | 3,124 | 3,124 | 3,124 | 3,124 | 15,620 |
| | 소계(b) | 3,073,266 | 3,078,314 | 3,085,314 | 3,105,314 | 3,132,314 | 15,474,522 |

▶▶ 투자비상환금(6년 균분상환)이 전액 상환 완료되는 2031년 이후에는 당기순이익이 현재 수준인 12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추계의 전제 및 근거

- 1) 공무원근로자 18명, 기간제근로자 14명/ 2024년 최저임금 인상분 1.7 퍼센트 가정, 인건비 매년 증액 추계
- 2) 투자비상환금: 6년 균분상환
 - 가) 2024년 기준 상환잔액(예상액): 7,266백만원
 - (1) 금액확정: 2024년 공인회계보고서(2025. 2.) 기준으로 변동 가능
 - (2) 손실보전(개보수) 충당금은 투자비로 상환

2. 2025년 예산: 3,073,266 (단위: 천원)

- 가. 인건비: 1,100,744
 - 1) 공무원: 756,117
 - 2) 기간제: 344,627
- 나. 연금부담금: 63,000
- 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 8,132
- 라. 행사운영비: 24,000
- 마. 재료비 및 소모품비: 133,200
- 바. 수리수선 및 자산취득: 92,200
- 사. 임차료: 51,200
- 아. 관리용역 및 지급수수료: 119,000
- 자.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108,700
- 차. 보험료 및 분담금: 46,232
- 카.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66,538
- 타. 투자비상환금(1회차): 1,220,000
- 파. 홍보비 등 기타: 40,320

3. 참고 자료

- 가.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2023년 운영현황에 대한 특정목적 감사보고서 (한울회계법인)
- 나. 에콜리안 거창골프장 추산부, 예산집행계획
- 다. 2023년 공무원 임금협약서(2023.11.24.)
- 라. 2024년 의령군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세출예산사업명세서(특별회계)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